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류제출을 사전 방문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 서류제출 시 당첨자 자격검증 및 계약을 위한 필요 서류 작성도 동시에 진행되니 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당첨자 외 동반 1인 입장 가능)

□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구 분	일 시	장 소
당첨자 서류 제출	2021. 07. 23(금) ~ 2021. 07. 29(목) 10:00 ~ 17: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86 더샵 수성오클레어 견본주택
정당계약	2021. 08. 01(일) ~ 2021. 08. 04(수) 10:00 ~ 16:00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구 분	해당 서류	발급 기준	확인 사항
공동 서류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계약 체결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필수 서류 (본인)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 기록대조일은 2020.07.02 ~ 2021.07.02까지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피부양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서약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배우자 분리세대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해당자 추가 서류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